

의안번호	2212615
의 퇴 인	김선교의원
회 답 일	2025.12.1.
추계번호	25B49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함 10.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기금의 용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상수원관리지역¹⁾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법」 제3조제17호²⁾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임
- 현행법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수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2)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질오염방지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³⁾

[표 1]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 현황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백만원)		681,736	639,207	620,357	570,717	562,556
사업비	소계	539,858	523,758	559,656	540,308	487,187
	주민지원사업	78,244	84,099	85,257	81,863	76,660
	환경기초시설	259,413	257,766	270,173	272,259	247,260
	기타수질개선	47,703	52,734	52,197	44,617	34,301
	토지매수 등	114,785	91,407	99,787	95,175	90,807
	오염총량관리	8,412	8,558	8,580	8,953	8,767
	친환경청정	22,202	19,970	34,044	28,273	20,654
	기금운영	9,099	9,224	9,618	9,168	8,738
여유자금 운용		141,878	115,449	60,701	30,409	75,36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이 시행되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상수원관리지역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추가될 경우, 이와 관련된 신규사업의 추진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되는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3)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